

안전 점검 결과 개수 곤란 사항 처리에 대한 검토

안전 점검 업무 수행상 현안 문제로 대두된 소위 「점검 결과 개수 곤란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점검 업무 개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방화 정보” 제18호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방재 연구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방재 연구 위원회의 1차 토의를 거쳐, 선정된 6명의 실무 작업 요원으로 하여금 해결 방안 초안을 작성중에 있다. 현재 작업 중인 내용 중에서 안전 점검의 문제점과 소유주의 의견 및 판계 행정 기관이 협회에 바라는 안전 점검은 무엇인지 소개코자 한다.

1. 목 적

안전 점검 결과 통보에 따른 행정 기관, 건물주 등의 반응을 안전 점검의 취지와 대비하여 점검 범위를 재정립하고 개수 곤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2. 검토 방향

이 현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안전 점검 결과 통보 내용 검토,

둘째, 안전 점검 결과 건물 소유주 반응 검토,

세째, 안전 점검에 대한 행정 기관의 반응 검토,

네째, 개수 곤란 사항 검토의 네가지 類型으로 검토 방향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토의·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가. 안전 점검 결과 통보 내용 검토

(1) 통보 내용(97 건 중)

◎ 대상 여부 또는 포괄 지적되는 사항 ; 47 건(예, 면면적 1,000 m² 이내 마다 방화구획 등)

◎ 구체적 지적 또는 기술적 사항 ; 50 건(예 ; 옥상에 연결 송수관 시험방수구 설치 등)

(가) 포괄 지적 대상의 세부 내용

○ 신설, 또는 개수 방법이 여러가지인 경우로 소유자, 점검자 모두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다(법에 있으니까 지적)

— 방화 구획 ; 대규모 건물로 구획 방법이 다양(점검원이 구체적 장소 지적이 곤란)

— 격벽 ; “목조 지붕틀 도리방향 12 m마다”로서 구체적 장소 명시 불명

— 자탐 ; “자탐 설비 신설”로서 구체적 지적이 곤란

○ 보완 사항이 다수인 경우로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현행 보고서 체제로는 문제가 있어 간략히 지적

— 자탐 ; 설치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구체적 지적이 곤란

- 일부 무작위 추출하는 경우 구체적 지적이 곤란(시장 등의 전기배선)
- 구체적 지적이 가능하나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노력, 시간이 소요되고 현행 보고서로는 곤란하여 간략히 지적
 - 방화 덤퍼 불량을 방화 구획 불량으로 지적
 - 일부 불량 사항을 포함적으로 지적
- (나) 구체적 지적 세부 내용
- 지적 내용 자체로서 설득력과 구체성이 있어 개수 의욕만 있으면 개수 용이하다.
 - 방화문에 자동 폐쇄 장치 부착
 - 위험물 탱크에 통기판 설치
 - 지하 모터에 3종 접지
- (2) 점검 누락 사항
- 관계법에 명시된 시설 점검 위주
 - 유지 관리 사항 미흡(추상적이고 인위적 사항 지적 곤란)
 - 방재 시설과 경제성 평가 미흡(경제성의 설득력 부족)
 - 방재의 종합 평가 미흡(직능별 점검, 부분 점검이 주원인)

나. 안전 점검 결과 전문 소유주 반응 검토

- (1) 전문주의 요구 내용
 - (가) 준공 검사시 문제되지 않은 사항이 점검시 다수 노출
 - 대부분 구조적 개수 곤란
 - 준공 후 추가 공사로 경비과증
 - 준공 전 점검 실시(준공 검사시 火協 참여)
 - 관계 기관과 점검 기준 차이
 - 지적시 구체적 대체 방안 제시
 - (나) 공정상, 구조상 개수 불가능 사항의 조치 요구
 - 작업 공정상 설치 불가능한 것(공장 방화 구획)
 - 건물 용도상 설치 불가능한 것(시장, 여객 터미널 방화 구획)
 - 구조상 개수 불가능한 것(위험물제조소의 슬라브 지붕 변경)
 - 기능상 개수 곤란한 것(극장내장재 교체)
 - (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 지양
 -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행정 기관 통보 지양
 - 점검 결과 개수 불가능 사항을 행정 기관 통보 지양
 - 점검 후 기술 지도하고 일정 기간 경과후 확인하여 행정 기관 통보
 - 경미한 사항, 간단히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문서화하지 말 것
 - (라) 안전 점검의 독자성 결여
 - 유사 내용을 점검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
 - 유사 점검을 너무 자주한다.
 - (마) 소방시설 자체 검정을 협회가 담당

- 시판 소방 기구 조잡(비 규격 불량품)

(바) 기술 지도 적극성 결여

-- 점검을 지적 위주에서 봉사정신으로

-- 법조항만을 따지지 말고 기술적 개선 방안 제시

- 점검 결과는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문 용어는 쉬운 말로 통보

- 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적 교육자료 제공

- 기술적 사항, 법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

-- 이재 사례 분석, 정기 간행물, 방재 서적 등 배포

- 방재용 슬라이드 필름 대여

(사) 안전 점검의 정밀화 등

- 중요 대형 물건은 정밀점검을 하고 현재보다 점검 회수 증가

다. 안전 점검에 대한 행정 기관의 반응 검토

(1) 외부 감사 수감시 지적된 점검 관련 사항

○ 방재 기술 향상을 위한 실험·연구 소홀 - 감사원(1980)

○ 법규 위반 사항의 참고 사항 처리불가 - 재무부(1980)

○ 점검 보고서에 양호사항의 구체성 미흡 - 재무부(1980)

○ 소방 시설의 법정 기준 명시 - 내무부(1981)

○ 개수 곤란 사항 소유주 통보 제한 - 내무부(1981)

○ 불량 방재 시설 방지를 위한 표준 설계도, 순회 교육 등의 제공 미흡 - 내무부(1981)

(2) 안전 점검 내용과 행정 명령 내용 비교

○ 구청(건축, 전기) 사항은 대부분 행정 명령화되고 있으나 소방서(소방시설 등) 사항은 선별 행정 명령되고 있다.

○ 지역별로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판서 행정 명령 일부 내용이 다르다.

* 서울, 부산; 안전 점검 결과 중에서 부분적 발췌

* 기타 지부; 안전 점검 결과 거의 인용

(3) 안전 점검 관련 법규 유권 해석

○ 경과 조치가 없는 경우 건축당시에 규정에 적합하면 추후 보완 조치 불가 - 건설부(1976)

○ 시장, 백화점 등은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방화 구획해야 한다. - 건설부(1976)

○ 방화 구획 규정 중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정할 필요가 없다. - 건설부(1976)

○ 비상 조명 장치의 세부 규정은 정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설계별 시공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건설부(1976)

(4) 행정 기관 지시 전의 내용

○ 안전 점검 결과는 1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 보험 계약시 안전 점검 실시 — 화보법(1973)

○ 안전 점검 결과는 행정 조치와 연결하여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되 위험도, 개수 비용의 경중

에 따라 단계적 행정조치(화보 담당 전담 직원 배치)

-총리 훈령 122호 (1974)

내무부 지침 방호 2052-13944

서울시 지침 방호 2052-195

○ 소방 시설 이외 사항은 소관 행정 기관에 통보하고 안전점검 결과는 위치, 명칭, 대표자, 점검 일자만 통보(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여부에 관한 것은 언급치 말 것)

-서울시 대 내무부 전의 방호 2052-4115 (1974)

* 상기 전의에 대하여 내무부는 개선 건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보는 소방서로 일원화한다는 지시

○ 방화 구획 피난 계단 등 현행법 미비 사항은 요망 사항으로 통보 협조

-서울시 지도 2052-1135 (1976)

○ 안전 점검은 관계 법규를 초월할 수 없고, 현행 점검 기준은 소방검사 규칙에 맞도록 제정 시행할 것

-내무부 예방 2082-4294, 16058, 18074, 17050 (1980)

○ 불량 사항에 대한 청탁 및 뮤인사례 발생 소지가 있고 현행 점검 결과 통보 제도를 민원 해소를 감안하여 변경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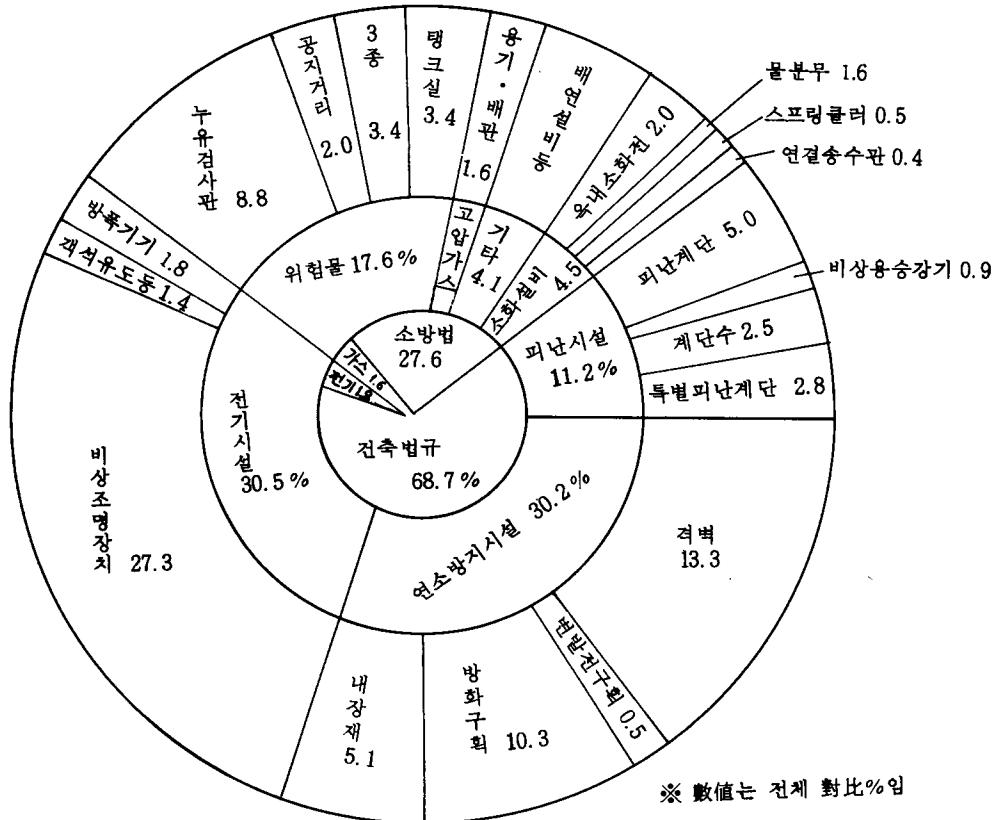
-내무부 예방 2082-5358 (1981)

라. 개수 곤란 사항 검토

(1) 시설별 개수 곤란 사항 순위

- (가) 비상 조명 장치(27.3%)
- (나) 격벽(13.3%)
- (다) 방화구획(10.3%)
- (라) 누유검사판(8.8%)
- (마) 내장재(6.1%)
- (바) 피난 계단(5.0%)
- (사) 배연 및 연결 살수 설비(4.1%)
- (아) 위험물 탱크실(3.4%)
- (자) 위험물 3종 소화 설비(3.4%)
- (차) 특별 피난 계단(2.8%)
- (카) 계단수(2.5%)
- (타) 기타(13.1%)

* 上記 순위는 1980년 1/4분기간 서울, 부산의 531건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문제점

가. 안전 점검 통보 내용이 포괄적이고 세부 내용이 누락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 못하고 법에 있으니 지적하는 경우 대부분(약 50%)
- 법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많다.

나. 건물 소유주는 개수 곤란 사항의 반복 지적 지양을 원하고 있다.

- 설계시 누락 사항 사후 지적은 불합리
- 공정, 구조상 개수 불가능 사항의 조치 요구
- 점검 결과 행정 명령 지양

다. 관계 행정 기관에서는 안전점검 자율화를 규제하고 있다(안전 점검 범위자체 설정 곤란)

- 관계 방재 법규 적용 점검 고수 주장
- 관계 법규 적용 등 행정상의 민원 발생을 防止에 전가

* 건축 당시부터 위법된 건물이 가장 큰 문제

라. 건축 당시 보완하지 않으면 사후 개수가 곤란한 시설은 계속적인 안전 점검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건축 방화 사항은 구조, 경제성으로 개수 곤란

이상의 문제점들은 협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서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실무 소위원회가 주 2회이상 열리고 있으며 뭘지 않아 구체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해결 방안이 방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그동안 누적되었던 점검상의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소극적이었던 대 건물주에의 자세를 쇄신하고 어느 정도 현실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점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